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6호 "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"에 의거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 축적을 통해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 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**제3조(근로장학생 선정 기준)** ① 본 제도의 수혜 대상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정규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한다.
 - 1. 기초생활수급자
 - 2. 차상위계층
 - 3. 가족의 연간 소득이 "세대당 평균소득"에 미달하는 자
 - 4. 가족의 연간 소득이 "세대당 평균소득"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(다만, 이경우는 본교 배정인원의 30%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)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"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 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"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본교에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 성적, 교수추천 등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.
 - ④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의 면제·감액의 대상이 되는 학생 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.
- 제4조(근로장소) ① 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 - 1. 전공 관련시설: 산업체(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), 공공기관(공기업 포함), 연구소, 시험·측정기관, 실험·실습시설, 도서관 등 교·내외 시설
 - 2. 비전공 시설 : 장애우, 아동복지,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, 저소득층 학생지원 시설(사업)
 - ② 전공 관련시설의 경우 근로장학생이 행정업무보조 및 청소 등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교내행정실 등의 행정지원부서는 포함되지 않지만, 국가장학생 지원업무를 위한 근로장학생 2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제5조(선정절차) ① 입학홍보처에서 근로장학생 선정계획에 따라 신청 공고를 한다.<개정 2021.7.22.>
 - ② 근로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신청을 한다.
 - 1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2.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
 - 3. 기타 입학홍보처에서 정하는 서류<개정 2021.7.22.>
- **제6조(근로기간 및 시간)** ① 근로장학생의 근로기간은 학기 중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정에 따라 방학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.
 - ② 근로시간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,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 이내로 한다.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금액 산정) 근로장학생의 시간당 지원금액은 노동부가 고시하는 매년도 시간당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,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제8조(장학금 지급) ① 장학금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, 매월 지급금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- ② 근로장학생의 자원에 의하여 근로를 그만 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월 미만 단위로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지원금의 관리) 본교에 교부된 근로장학 지원금은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
- 제10조(결산보고) ① 근로장학 지원금의 집행 실태는 반기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근로장학 지원금의 집행 결과는 익년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기타사항)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훈령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9. 2. 2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